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05시 20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도시공원등에서의 금지행위	3

도시공원등에서의 금지행위

2014.04.17 조회수 67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0
담당부서	공원과
상위법령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
조례	여수시 도시공원등 관리 조례 제18조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신설규제
존속기한	2012-08-10
규제내용	제18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1.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.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59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1

Yeosu Web Contents

